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33

발의연월일: 2020. 9. 9.

발 의 자:김교흥·정일영·이성만

유동수 · 조응천 · 허종식

정성호 · 문진석 · 남인순

홍영표 · 김남국 · 양정숙

박홍근 • 이병훈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. 법률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,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·군·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음. 따라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·면·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.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읍·면·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63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2제1항 후단 중 "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"를 "조정대상지역은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(행정동을 말한다)의 지역 단위에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의2(조정대상지역의 지정	제63조의2(조정대상지역의 지정
및 해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	및 해제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	
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	
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	
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	
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	
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	
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	<u>조정대상지역은 시·군·구 또</u>
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	<u>는 읍·면·동(행정동을 말한다)의</u>
<u>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</u>	지역 단위에서 그 지정 목적을
<u>로 한다</u> .	<u>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</u>
	로 지정한다.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